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-4조의2(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의 예외) 영 제171조제1항에서 “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상법」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
2. 「상법」 제462조의2에 따른 주식배당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-4조의2(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의 예외) 영 제171조제1항에서 “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1. 「상법」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</p> <p>2. 「상법」 제462조의2에 따른 <u>주식배당</u></p>